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1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김도운, 문희성, 강혜순  
 홍영진, 이명녀, 박경흠  
 김태욱, 정재환, 문기호  
 안영호

##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민원의 정의를 준용하고 기존 훈령(「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안 제5조2 신설 및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 라. 민원 종류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23조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5. 4. 17. ~ 4. 24.(7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중 “별지”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처리할”을 “처리하도록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접수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처리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시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설명,”을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의,”를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민원과”로, “등의”를 “등 고충”으로 한다.

[별지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별지 제1호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p>	<p>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 ----- 법 제21조----- ----- ----- ----- -----</p>



<신 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의 처리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 시에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5조의2(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처리기간) ① -----  
-----  
-----  
-----.

1.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 민원과 --- 등 고충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 전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소관담당		통지년월일	년 월 일
민원요지			
처리결과 (내 용)			

○○○ 전문위원 ○○○ 서명(날인)

【별지 제4호 서식】

## 고 층 민 원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민 원 인	주 소		
	성 명		
건 명			
민 원 요 지			
처 리 의 견			
특 이 사 항			

○○○ 위원회위원장 ○○○ 서명(날인)

【별지 제5호서식】

고 충 민 원 처 리 상 황

건 명		접 수 번 호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처 리 일 자	년 월 일		
처 리 결 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인)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함.

##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권기연
- 연락처: (052)290-4241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누리집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삭제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2. 접수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처리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

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시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5조의2(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의장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민원과 진정, 탄원, 호소 등 고충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소관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